

부산지방법원 2022. 11. 17 선고 2021가단34924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2. 11. 17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5지분에 관하여 2012. 11. 7.1)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5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1. 3. 30. 접수 제23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

판사이성진

별지

1) 청구취지에는 2021. 3. 30.로 기재되어 있으나, 청구원인과 원고가 제출한 등기부 등을 종합하면, 이는 2012. 11. 7.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였다.